

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

□ 장학금명 :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

□ 장학금 개요

- 배정인원 : 3명
- 지원금액 : 학기당 150만원(생활비 무상보조)
- 지원기간 : 2개 학기('23년 1학기~2학기)

□ 선발자격

-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(장애인가정, 새터민가정,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,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,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, 다문화가정, 주거비 지원 필요자)
- 학자금 지원구간 : 1학기 기준 3구간 이내
- 성적 : 신규 장학생 성적기준 없음, 2학기 계속장학생은 직전 정규학기('23년 1학기) 70점(백분위) 이상
 - ※ '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선발 불가
 - ※ '23년 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은 선발 불가

□ 장학금 신청 : 송의포털>장학신청>'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' 검색하고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신청

□ 신청기간 : 2023.4.13.(목)~4.18(화)

□ 제출서류 : [붙임] 참고

붙임

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

구분	자격	제출서류
1. 장애인 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훈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'중증' 장애인 또는 그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 증명서('중증' 표기) 또는 장애인등록증(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기재된 서류)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2. 새터민 가정 (탈북주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인 경우)
3.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(붙임3), 재원증명서, 입소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
4.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	<p>【학생가장 본인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자격)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(자격확인) 가족관계증명서 (제한) 기혼자 지원 제외 <p>【조손가정 자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/모가 사회적 배려계층*에 해당되어야 함 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조손가정의 경우), 사실관계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) ※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
5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* 본인 또는 그 자녀 *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,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
6. 한부모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* * 만 22세 미만(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가족 증명서
7. 다문화 가정	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(개명 등)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
8. 주거비 지원 필요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자격)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(자격확인) 기숙사 고지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(제한)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(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) 지원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(월세)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초/등본 기숙사, 고시원 등: 입실확인서(붙임2),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※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: (미혼 본인 또는 부모(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※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 ※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※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